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9.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1. 9. 26

다. 상정일자 : 2001. 9. 26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종철

나. 개정사유

- 화순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따라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규제된 내용이 완화 되도록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코자함.

다. 주요내용

-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제7조4항의 지장금고 등에 우선지정 내용을 삭제하고, 제10조 제2항의 증지보유 사항을 완화토록 정비하였으며, 제11조 제1항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시 신청시 제출 사항을 삭제하며, 제14조의 판매인의 승계와 제15조의 판 또는 관계인의 신고 사항을 삭제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규제내용을 완화 조치코자하는 개정 조례안임.
- 개정코자하는 내용을 보면 수입증지를 지장새마을금고나 공제회 등 직원 복지회에서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를 삭제하였으며,

-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승계등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내용을 완화 조치함으로써 증지판매인의 불편해소 및 권익신장에 기여 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1. 9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화순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된 내용이 완화되도록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 코자함.

2. 주요골자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제7조4항의 지장금고 등에 우선지정 내용을 삭제하고, 제10조 제2항의 증지보유 사항을 완화도록 정비하였으며, 제11조 제1항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시 신청서제출 사항을 삭제하며, 제14조의 판매인의승계와 제15조의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 사항을 삭제코자함.

3. 관련법령 및 근거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2001.7.5)에서 심의 의결된 2001년도 행정규제사무 정비 계획에 의함.

화순군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판매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판매인 지정) ①~③ <생략></p> <p>④ 군수는 직장세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 에서 판매인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7조(판매인지정)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생략></p> <p>②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 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p>	<p>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p>
<p>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 폐지) 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 청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 폐지) ①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 청 하여야 한다.</p>	<p>제14조(판매인의 승계) <삭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판매인이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p> <p>2. 판매인이 사망한 때</p>	<p>제15조(판매 또는 관계인신고) <u><삭제></u></p>